의 안 번 호

1700

【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[플랫폼]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]

보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20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. 21.(목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2. 22.(월)

2. 제안이유

- 이팔청춘 마을공방은 기존 지역기반 소규모 문화관광 업체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워하고,
-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역 중심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종사자	시설현황
이팔청춘 마을공방	새즈믄해	187.5㎡ (단층)	3명	○ 체험 및 전시 공간,
	거리 28		(대표 1, 관광종합정보	공유 주방, 소공연,
	(성남동)		공유소 및 공간 운영 2)	사무실 등
위치도	변지 호기리 (주민년) (구민년) (구민년)	의 의성을 기계	● 이탈청춘 마을공방 별별 문화센터 공항 의행보지 MW이터 NHK업은행 이성주는 마리바계로 의용시장	# # # # # # # # # # # # # # # # # # #

나. 위탁사무 내용

-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(플랫폼) 운영
- 이팔청춘 마을공방 공간 운영
- 마을공방 프로그램 홍보, 참여 등을 통한 소통창구 활용
- 관광종합공유소를 통한 지역 참여자 및 문화관광사업 자료 구축
- 방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채널 확대
- 그 밖에 이팔청춘 마을공방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다. 위탁기간 : 2021. 3. 1. ~ 2021. 12. 31.
- 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- **마. 소요예산** : 50,000천원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」 제27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1항, 제5조, 제6조, 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중구 관광 플랫폼과 연계하는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진흥조례」 제27조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

- 제27조(관광진흥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1. 관광객 유치
 - 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,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
 - 3.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
 - 4. 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, 양성 및 운영
 - 5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, 방법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- 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 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